

위치	오류유형	수정 전	수정 후																																
이론편 201~201p ③ 회사의 해산사유	개념, 공식-설명	③ 회사의 해산사유 ㉠ 공동된 해산사유(합자회사 제외)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합병, 파산,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 상법상 각 회사의 개별사유 ·합명회사는 총사원의 동의, 사원이 1인으로 된 때(상법 제227조 제2호·제3호)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 또는 유한책임사원 한쪽의 전원 퇴사(상법 제285조 제1항) ·유한회사는 사원총회의 특별결의(상법 제609조 제1항 제2호) ·주식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및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상법 제517조 제1호의2·제2호) ·유한책임회사는 총사원의 동의, 사원이 없게 된 경우(상법 제287조의38 제1호·제2호).	③ 회사의 해산사유 ㉠ 공동된 해산사유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합병, 파산,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상법 제227조 제1호, 제4호 내지 제6호) ㉡ 개별적 해산사유 ·합명회사는 총사원의 동의, 사원이 1인으로 된 때(상법 제227조 제2호·제3호) ·합자회사는 총사원의 동의, 사원이 1인으로 된 때(상법 제269조·제227조 제2호·제3호), 무한책임사원 또는 유한책임사원 한쪽의 전원 퇴사(상법 제285조 제1항) ·유한회사는 사원총회의 특별결의(상법 제609조 제1항 제2호) ·주식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및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상법 제517조 제1호의2·제2호) ·유한책임회사는 총사원의 동의, 사원이 없게 된 경우(상법 제287조의38 제1호·제2호).																																
문제편 320~320p 핵심만 콕 번호 : 16	해설	상법상 회사의 해산사유 <table border="1"> <tr> <td rowspan="5">상법상 회사의 해산사유</td> <td>합명회사</td> <td>공동된 해산사유(합자회사 제외)</td> <td>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합병, 파산,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td> </tr> <tr> <td>합자회사</td> <td>공동된 해산사유(합자회사 제외)</td> <td>총사원의 동의, 사원이 1인으로 된 때(상법 제227조 제2호·제3호)</td> </tr> <tr> <td>유한회사</td> <td>개별적 해산사유</td> <td>무한책임사원 또는 유한책임사원 한쪽의 전원 퇴사(상법 제285조 제1항)</td> </tr> <tr> <td>주식회사</td> <td>개별적 해산사유</td> <td>사원총회의 특별결의(상법 제609조 제1항 제2호)</td> </tr> <tr> <td>유한책임회사</td> <td>개별적 해산사유</td> <td>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및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상법 제517조 제1호의2·제2호)</td> </tr> </table>	상법상 회사의 해산사유	합명회사	공동된 해산사유(합자회사 제외)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합병, 파산,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합자회사	공동된 해산사유(합자회사 제외)	총사원의 동의, 사원이 1인으로 된 때(상법 제227조 제2호·제3호)	유한회사	개별적 해산사유	무한책임사원 또는 유한책임사원 한쪽의 전원 퇴사(상법 제285조 제1항)	주식회사	개별적 해산사유	사원총회의 특별결의(상법 제609조 제1항 제2호)	유한책임회사	개별적 해산사유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및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상법 제517조 제1호의2·제2호)	상법상 회사의 해산사유 <table border="1"> <tr> <td rowspan="5">상법상 회사의 해산사유</td> <td>합명회사</td> <td>공동된 해산사유</td> <td>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합병, 파산,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td> </tr> <tr> <td>합자회사</td> <td>공동된 해산사유</td> <td>총사원의 동의, 사원이 1인으로 된 때(상법 제227조 제2호·제3호)</td> </tr> <tr> <td>유한회사</td> <td>개별적 해산사유</td> <td>총사원의 동의, 사원이 1인으로 된 때(상법 제269조 제2호·제3호)</td> </tr> <tr> <td>주식회사</td> <td>개별적 해산사유</td> <td>무한책임사원 또는 유한책임사원 한쪽의 전원 퇴사(상법 제285조 제1항)</td> </tr> <tr> <td>유한책임회사</td> <td>개별적 해산사유</td> <td>사원총회의 특별결의(상법 제609조 제1항 제2호)</td> </tr> </table>	상법상 회사의 해산사유	합명회사	공동된 해산사유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합병, 파산,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합자회사	공동된 해산사유	총사원의 동의, 사원이 1인으로 된 때(상법 제227조 제2호·제3호)	유한회사	개별적 해산사유	총사원의 동의, 사원이 1인으로 된 때(상법 제269조 제2호·제3호)	주식회사	개별적 해산사유	무한책임사원 또는 유한책임사원 한쪽의 전원 퇴사(상법 제285조 제1항)	유한책임회사	개별적 해산사유	사원총회의 특별결의(상법 제609조 제1항 제2호)
상법상 회사의 해산사유	합명회사	공동된 해산사유(합자회사 제외)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합병, 파산,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합자회사	공동된 해산사유(합자회사 제외)		총사원의 동의, 사원이 1인으로 된 때(상법 제227조 제2호·제3호)																															
	유한회사	개별적 해산사유		무한책임사원 또는 유한책임사원 한쪽의 전원 퇴사(상법 제285조 제1항)																															
	주식회사	개별적 해산사유		사원총회의 특별결의(상법 제609조 제1항 제2호)																															
	유한책임회사	개별적 해산사유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및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상법 제517조 제1호의2·제2호)																																
상법상 회사의 해산사유	합명회사	공동된 해산사유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합병, 파산,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합자회사	공동된 해산사유	총사원의 동의, 사원이 1인으로 된 때(상법 제227조 제2호·제3호)																																
	유한회사	개별적 해산사유	총사원의 동의, 사원이 1인으로 된 때(상법 제269조 제2호·제3호)																																
	주식회사	개별적 해산사유	무한책임사원 또는 유한책임사원 한쪽의 전원 퇴사(상법 제285조 제1항)																																
	유한책임회사	개별적 해산사유	사원총회의 특별결의(상법 제609조 제1항 제2호)																																

위치	오류유형	수정 전	수정 후																						
문제편 335~335p 번호 : 18	문제-본문	18 다음 중 합자회사를 제외한 회사의 공통된 해산사유가 아닌 것은? ① 존립기간의 만료 ②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③ 사원이 없게 된 경우 ④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핵심만 콕 상법상 회사의 해산사유 <table><tr><td rowspan="5">각 회사의 개별 해산사유</td><td>합명회사</td><td>총사원의 동의, 사원이 1인으로 된 때(상법 제227조 제2호·제3호)</td></tr><tr><td>합자회사</td><td>무한책임사원 또는 유한책임사원 한쪽의 전원 퇴사(상법 제285조 제1항)</td></tr><tr><td>유한회사</td><td>사원총회의 특별결의(상법 제609조 제1항 제2호)</td></tr><tr><td>주식회사</td><td>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및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상법 제517조 제1호의2·제2호)</td></tr><tr><td>유한책임회사</td><td>총사원의 동의, 사원이 없게 된 경우(상법 제287조의38 제1호·제2호)</td></tr></table>	각 회사의 개별 해산사유	합명회사	총사원의 동의, 사원이 1인으로 된 때(상법 제227조 제2호·제3호)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 또는 유한책임사원 한쪽의 전원 퇴사(상법 제285조 제1항)	유한회사	사원총회의 특별결의(상법 제609조 제1항 제2호)	주식회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및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상법 제517조 제1호의2·제2호)	유한책임회사	총사원의 동의, 사원이 없게 된 경우(상법 제287조의38 제1호·제2호)	18 다음 중 회사의 공통된 해산사유가 아닌 것은? ① 존립기간의 만료 ②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③ 사원이 없게 된 경우 ④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핵심만 콕 상법상 회사의 해산사유 <table><tr><td rowspan="5">개별적 해산사유</td><td>합명회사</td><td>총사원의 동의, 사원이 1인으로 된 때(상법 제227조 제2호·제3호)</td></tr><tr><td>합자회사</td><td>총사원의 동의, 사원이 1인으로 된 때(상법 제269조 제2호·제3호) · 무한책임사원 또는 유한책임사원 한쪽의 전원 퇴사(상법 제285조 제1항)</td></tr><tr><td>유한회사</td><td>사원총회의 특별결의(상법 제609조 제1항 제2호)</td></tr><tr><td>주식회사</td><td>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및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상법 제517조 제1호의2·제2호)</td></tr><tr><td>유한책임회사</td><td>총사원의 동의, 사원이 없게 된 경우(상법 제287조의38 제1호·제2호)</td></tr></table>	개별적 해산사유	합명회사	총사원의 동의, 사원이 1인으로 된 때(상법 제227조 제2호·제3호)	합자회사	총사원의 동의, 사원이 1인으로 된 때(상법 제269조 제2호·제3호) · 무한책임사원 또는 유한책임사원 한쪽의 전원 퇴사(상법 제285조 제1항)	유한회사	사원총회의 특별결의(상법 제609조 제1항 제2호)	주식회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및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상법 제517조 제1호의2·제2호)	유한책임회사	총사원의 동의, 사원이 없게 된 경우(상법 제287조의38 제1호·제2호)
각 회사의 개별 해산사유	합명회사	총사원의 동의, 사원이 1인으로 된 때(상법 제227조 제2호·제3호)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 또는 유한책임사원 한쪽의 전원 퇴사(상법 제285조 제1항)																							
	유한회사	사원총회의 특별결의(상법 제609조 제1항 제2호)																							
	주식회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및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상법 제517조 제1호의2·제2호)																							
	유한책임회사	총사원의 동의, 사원이 없게 된 경우(상법 제287조의38 제1호·제2호)																							
개별적 해산사유	합명회사	총사원의 동의, 사원이 1인으로 된 때(상법 제227조 제2호·제3호)																							
	합자회사	총사원의 동의, 사원이 1인으로 된 때(상법 제269조 제2호·제3호) · 무한책임사원 또는 유한책임사원 한쪽의 전원 퇴사(상법 제285조 제1항)																							
	유한회사	사원총회의 특별결의(상법 제609조 제1항 제2호)																							
	주식회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및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상법 제517조 제1호의2·제2호)																							
	유한책임회사	총사원의 동의, 사원이 없게 된 경우(상법 제287조의38 제1호·제2호)																							

도서의 오류로 학습에 불편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더 나은 도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시대교육그룹이 되겠습니다.